

2026학년도 2학기 미래캠퍼스 학부생 일반휴학 안내

- ☑ 일반휴학은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 출석이 어려울 때 신청하는 제도이며, 군복무를 위한 '입대휴학'과는 구분됩니다.
- ☑ **휴학 연한(통산 6학기) 내에서는 일반휴학(질병)과 일반휴학(가사)의 휴학 횟수 차감 기준이 동일합니다.**
 - 휴학 기한이 만료된 학생 중 질병 치료를 위해 추가 휴학이 필요한 경우, 질병 휴학 내용을 확인 후 건강관리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휴학 신청 방법 및 기간

가. 신청방법: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휴학신청 ⇨ 휴학구분 [일반휴학(가사)]로 신청

나. 신청기간

휴학 신청 및 승인 시점	휴학 신청 자격	수업료 반환
2026. 8. 3.(월) 10:00 ~ 9. 14.(월) 17:00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휴학 신청 가능	수업료 전액
2026. 9. 15.(화) 9:00 ~ 11. 13.(금) 17:00	2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후에 휴학 신청 가능	휴학 승인 시점별 수업료 반환을 적용
2026. 11. 16.(월) 9:00 ~ 12. 1.(화) 17:00	질병·출산·천재지변·법적조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휴학 신청 가능	

※ 수업료 반환은 **2026. 11. 29.(일) 17:00까지 휴학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수업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3p '휴학 승인 시점별 수업료 반환률' 참고)

※ 휴학 신청 및 승인 시점에 따라 납부한 수업료가 반환되며, 복학 학기로 수업료가 이월되지 않습니다.

■ 일반휴학 종류 및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일반휴학	별도 서류 없음	
입대휴학 만료자 일반휴학	- 군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복무확인서 등 성명, 생년월일, 입대일 및 전역일이 명시되어있는 서류	※ 전역 후 입대휴학 기간이 만료되어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질병휴학	1. 전문의 진단서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본교 의료원 또는 보건복지부 지정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 - 1개월 이상 학업 수행이 불가능함 또는 1개월 이상 입원 또는 안정가료가 필요 하다는 전문의 소견 명시 필요 2. 건강관리센터 확인 절차 - 진단서를 지참하고 건강관리센터(학생회관 2층, ☎ 033-760-2644)에 방문하여 학교 의사와 상담(사전 예약 필수) - 상담 완료 후 건강관리센터에서 학사지원팀으로 공문 발송되면 신청 완료	※ 질병의 종류에 따라 진단서 발급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니 충분한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예약 후 학생 본인이 방문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족 대리 방문 가능(3p 유의사항 참고)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창업·창업준비휴학	- 미래창업지원단(☎ 033-760-5022, 학생회관 229호)에 관련 서류(신청서, 회사소개서, 성과증빙서류, 사업아이템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여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창업휴학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u>일반휴학과 신청기간이</u> <u>상이하므로 미래창업지원단</u> <u>홈페이지</u> 에 게시되는 공고 확인 필요

■ 일반휴학 기간

- 가.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건축학(5년제) 과정은 7학기, 약학대학 약학과 2+4년제 편입생은 3년(6학기), 통합 6년제는 4년(8학기)까지 가능하며, 편입학생의 휴학기간은 편입학 이후 잔여 재학연한의 1/2 이내로 함
- 나. 휴학 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질병 치료를 이유로 휴학연한의 연장을 청원하고 소속 대학장이 제청할 경우 총장은 1학기 간의 휴학을 최대 2학기까지 허가할 수 있음
- 다. 임신, 출산 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단,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 1년, 통산하여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으며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 라. 창업(준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 1년, 통산하여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으며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단, 창업준비휴학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마. 국가고시(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기술), 입법고시) 합격자가 연수원 교육으로 인하여 휴학기간 연한을 초과하여 휴학해야 할 경우 소속 대학장의 제청으로 연수원 교육기간만큼 휴학 연장을 허가할 수 있음
- 바. 휴학학기 수 조회 :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생 ⇨ 학적정보조회 참고
사용한 휴학학기 수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함. (휴학신청 ⇨ 휴학신청내역 및 상세정보 참고)

■ 일반휴학 기간 연장

✓ 휴학 중인 학생이 복학하지 않고 휴학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 가. 휴학 잔여 학기가 남아있는 경우: 별도 휴학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휴학 기간이 연장됨
- 나. 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경우(잔여 학기 없음): 더 이상의 휴학 연장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복학 신청을 하고 등록금 납부해야 함. (정해진 기간 내 미복학, 미등록, 미수강시 제적 처리됨)

■ 일반휴학 신청 취소 방법

가. 일반휴학 취소 가능 기한: 2026. 9. 2.(수) 17:00까지

- 1) 2026학년도 2학기 수강변경 전날(2026. 9. 2.(수) 17:00)까지만 취소 가능
※ 수강변경기간 시작일(2026. 9. 3.) 이후 휴학 취소 불가
- 2) 일반휴학 취소는 휴학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 1회에 한하여 가능

나. 취소 신청 방법

- 1) 연세포탈서비스에서 신청
 - 취소 가능 기간: 2026. 8. 3.(월) 10:00 ~ 8. 14.(금) 17:00(수강신청 마지막 날)
 -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학적 ⇨ [휴복학] ⇨ [일반휴학취소신청]
- 2) 일반휴학 취소원 제출
 - 취소 가능 기간: 2026. 8. 18.(화) 10:00 ~ 9. 2.(수) 17:00(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 전)
 - [학교 홈페이지 ⇨ 학사지원 ⇨ 각종 신청서 양식 모음]에서 '일반휴학 취소원' 서식을 작성하여 미래교무처 학사지원팀 이메일(res108@yonsei.ac.kr)로 제출

다. 유의사항

- 1) 일반휴학을 취소할 경우 학적 상태는 '재학'으로 변경됨. 단, 휴학 승인과 동시에 기존의 수강신청 내역은 시스템에서 자동 삭제되며, 휴학을 취소하더라도 이전에 신청했던 과목의 수강권을 보장받을 수 없음
- 2) 일반휴학 취소 가능 기한(2026. 9. 2.) 이후에는 휴학 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본인의 휴학 신청 의사와 휴학 필요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휴학을 신청해야 함

■ 휴학 승인 시점별 수업료 반환

휴학 승인 시점	수업료 반환률	비고
2026. 9. 14.(월) 17:00 까지	전액	
9. 30.(수) 17:00 까지	수업료의 5/6	
10. 30.(금) 17:00 까지	수업료의 2/3	
11. 13.(금) 17:00 까지 <일반휴학 신청 마감 일자>	수업료의 1/2	학기 2/3선
11. 29.(일) 17:00 까지	수업료의 1/2	질병·출산·천재지변·법적조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11. 29.(일) 17:01 이후	반환 없음	

가. 수업료 반환은 학기별 등록금 반환 일정에 준함

나. **수업료 반환 소요 기간 : 휴학 승인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약 2주**

다. 반환 계좌 : 학생 본인의 연세포탈서비스 등록 계좌 (계좌 정보 미등록시 휴학 신청 불가, 휴학 신청 시점에 등록된 계좌로 반환 [휴학 후 수정 시 미적용])

- 1)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정보조회 → 계좌정보 변경 →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입력 → 계좌확인 → 저장
※ 외국국적자 계좌등록 '확인'처리는 **미래총무처 재무팀**을 통해서 가능(☎ 033-760-2149, 대학본부 206호)
- 2)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반환액은 대출받은 기관으로 상환
- 3) 장학금 수혜자는 미래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 033-760-2674, 학생회관 235호)에 장학금 취소 신청을 해야 휴학 신청 가능

■ 유의사항

가. 신청 자격 및 제한 사항

- 1)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예정자복수전공 합격생(캠퍼스내·간 복수전공생 제외)은 입학 후 첫 학기에 **질병, 임신, 출산, 입대**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음
- 2)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VSP) 파견 기간 중 휴학 불가
- 3) 2027년 2월 졸업신청자는 졸업신청 취소를 해야 휴학 신청 가능
- 4) **휴학 신청 전 반드시 보호자와 충분히 협의하기 바람**

나. 학적 및 성적 처리

- 1) 학기 중 일반휴학 시 **해당 학기수강신청 내역은 전체 취소 처리함**
- 2) 휴학 승인 시점부터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며, 복학 후 해당 학기 개강 및 등록금 납부 완료 이후부터 다시 발급 가능함

다. 장학 취소 및 수업료 반환

- 1) 학기 중 휴학 시 당해 학기 장학금은 전액 취소되며 다음 학기로의 이월 불가
- 2) **장학금 수혜자는 미래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학생회관 235호)을 방문하여 장학금 취소 요청서 제출 후 장학금취소 요청하여야만 휴학신청 가능**
- 3) 휴학 시 국가근로가 불가하며, 근로는 휴학 학적변동 시작일자 전날까지 인정
- 4) 장학금으로 등록금 선감면 받은 경우, 휴학 신청 시점의 수업료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음
- 5) 후지급으로 등록금성 장학금을 수혜 받은 경우, 후지급 장학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장학금취소 가능
- 6) 휴학 또는 자퇴에 따른 수업료 반환 기준의 마지막 날이 주말인 경우, 직전 평일 업무 종료 이후부터 주말 동안 휴학(또는 자퇴)을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포탈 신청을 우선 인정합니다. 이 경우 장학금 반환 절차는 예외적으로 다음 첫 평일 근무일 12:00까지 학생지원팀에서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까지 장학금 반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휴학 승인이 불가하며, 기존 신청은 취소됩니다.
- 7) 장학금 관련 문의사항 발생 시, 미래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으로 문의
- 033)760-2674,2675 / wstudent@yonsei.ac.kr

- **기한 내 장학금 반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휴학이 승인 불가하며 기존 신청 건은 취소 처리함**

라. 기타

- 1) **주요 학사 안내와 긴급 연락을 위해 휴학 중에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연세포탈서비스에서 직접 수정해야 함**

- 2) 건강센터 확인서 발급시 학생 본인 방문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이 대리 방문할 경우 학생의 학생증을 지참해야 하며, 진단서에 대리 방문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필요 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마. 문의처

- 1) 일반휴학 관련 상세 규정: ☑ 학칙 제8장, ☑ 학사에대한내규 제6장, 제8장 등
- 학교 홈페이지 ⇨ 연세소개 ⇨ 대학현황 ⇨ 규정집 ⇨ 본문 '휴학' 검색하여 확인 가능
- 2) 기타 학사행정 문의 경로: 학교 홈페이지 ⇨ 학사지원 ⇨ 온라인 도우미/건의함
- 3) 휴학 관련 문의처(033-760-해당부서 내선번호)
 - ☎ 휴 · 복학 문의: 미래교무처 학사지원팀(2158)
 - ☎ 질병휴학관련: 건강관리센터(2644)
 - ☎ 창업(준비)휴학 관련: 미래창업지원단(5022)
 - ☎ 등록금 납부 및 수업료 반환: 미래총무처 재무팀(2149)
 - ☎ 장학금: 미래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2674)
 - ☎ 휴학 중 건강공제회 가입: 학생건강공제회(5430)
 - ☎ 예비군 관련: 예비군연대(2595)